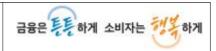


보도자료



보도	2024.9.10.(화) 조간	배포	2024.9.9.(월)			
담당부서	중소금융검사1국	책임자	국	장	이현석	(02-3145-7410)
	검사기획팀	담당자	팀	장	이건필	(02-3145-7370)
	검사1팀		팀	장	김대영	(02-3145-7385)
	금융투자검사2국	책임자	국	장	권영발	(02-3145-7690)
	자산운용기획조정팀	담당자 -	팀	장	유석호	(02-3145-7620)
	검사5팀		팀	장	김영중	(02-3145-7651)

A저축은행 및 B자산운용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(잠정)

- ◈ 금융감독원은 최근 A저축은행과 B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PF 대출채권 매각 관련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,
 - A저축은행이 자신이 투자한 사모펀드(일명 'PF 정상화 펀드')*에 투자금액 비율만큼 자신의 PF 대출채권을 매각**하면서 장부가 대비 높은 금액에 매각하여 당기순이익을 부당하게 과다 인식(충당금 환입 129억원)하였고,
 - * 대출채권 매도자 = 펀드 투자자
 - ** 장부상 부실 PF대출채권이 해당 채권을 편입한 펀드의 수익증권으로 대체
 - 이 과정에서 B자산운용사가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확정하는 등 일명 'OEM 펀드'를 운용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.
- ◈ 이에 금융감독원은 A저축은행의 旣발생 매각이익에 대해서는 유가증권(수익증권) 손상차손 인식* 및 장부 재계상 등을 지도**하고,
 - * 펀드에 투자한 타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손상차손 인식 지도
 - ** 매각자산을 저축은행 장부에 재계상하는 방식 등을 통해 편법 매각으로 인한 연체율·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효과도 제거할 예정
 - B자산운용사의 **OEM 펀드 운용** 등 **위법·부당 행위**에 대해서는 **엄정 조치**할 예정입니다.
- ◈ 금융회사는 PF 대출채권 정리과정에서 편법적 금융질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, 금융감독원은 금융 회사가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속하고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PF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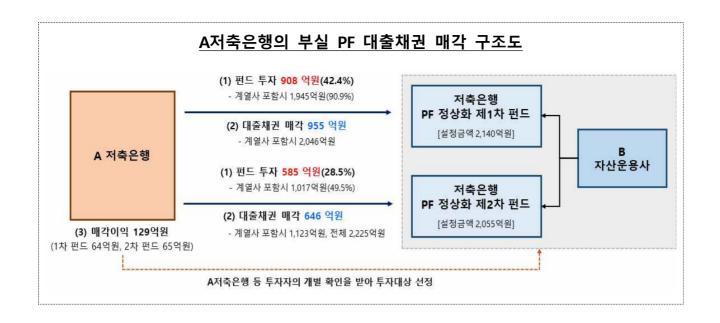
I. 검사개요 및 현황

1 검사개요

- □ 최근 저축은행의 부실 PF 대출채권 정리과정에서 **사모펀드 조성**을 통한 **부실이연 가능성**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.
 - 금융감독원은 부실 PF 대출채권 매각이 많았던 **A저축은행**과 관련 펀드 운용사인 **B자산운용사**에 대해 **수시검사**를 실시하였습니다.

2 펀드투자 및 F매각 현황

- □ '24.6월 A저축은행은 B자산운용의 제1차 펀드에 908억원을 투자*하였으며
 - * 계열사 포함시 1,945억원 투자로 펀드 총설정액의 90.9%(기타 선순위 투자자 195억원, 9.1%)
 - 이후 자신의 **부실 PF 대출채권**을 장부가액(대출원금-충당금) 보다 **높은** 가격으로 매각*하여 매각이익 64억원(계열사 포함 151억원)을 인식하였습니다.
 - * 대출원금(1,081억원) × 할인율(11.7%) = 매각가격(955억원)
- □ '24.8월 A저축은행은 B자산운용의 제2차 펀드에 585억원을 투자* 하였으며 그 외 4개 저축은행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.
 - * 계열사 포함시 1,017억원 투자로 펀드 총설정액의 49.5%(기타 선순위 투자자 300억원, 14.6%)
 - 이후 부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(대출원금-충당금)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*하여 매각이익 65억원(계열사 포함 79억원)을 인식**하였습니다.
 - * 대출원금(715억원) × 할인율(9.7%) = 매각가격(646억원)
 - ** 그 외 4개 저축은행 중 3개시도 5억원~25억원의 이익을 인식하는 등 과도하게 높은 기격으로 매각
- □ 이 과정에서 선순위 외부투자자 제외시 저축은행별 **펀드투자비율**을 **PF 대출채권 매각비율**과 **정확히 일치***하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.
 - * A저축은행의 펀드투자 비중과 매각채권 비중 1차펀드: 외부투자 제외시 펀드투자 908억원(46.7%) = 펀드 매각 부실채권 955억원(46.7%) 2차펀드: 외부투자 제외시 펀드투자 585억원(33.3%) = 펀드 매각 부실채권 646억원(33.3%)



Ⅱ. 검사결과 주요 내용(잠정)

1 A저축은행의 PF대출채권 부실 이연

- □ A저축은행은 B자산운용사가 설정한 2개의 「저축은행 PF 정상화 펀드」에 상당 금액*을 투자하면서,
 - * 1차 펀드 908억원(설정액의 42.4%, 계열사 포함시 90.9%), 2차 펀드 585억원(28.5%, 계열사 포함시 49.5%)
 - 해당 펀드에 투자비율과 **정확히 일치**하는 비율로 자신의 **PF 대출채권을 매각**함에 따라 PF대출채권이 **펀드수익증권**으로 **대체**되어 매각시점 에서는 사실상 PF대출채권을 보유한 것과 **동일한 효과**가 발생하였습니다.
 - 이 과정에서 A저축은행은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하여 당기순이익을 부당하게 과다 인식(충당금 환입 129억원)^{*} 하였고 연체율 등 건전성이 양호^{**}한 것으로 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.
 - * 대출채권 매각이익(충당금 환입) : 1차 펀드 64억원, 제2차 펀드 65억원
 - ** 부실 PF대출채권 매각으로 6월말 연체율 2.6%p 하락 효과(16.2% →13.6%)
 - ➡ A저축은행은 본인이 투자한 펀드에 부실 PF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매각이익을 인식하여 부실을 이연하였습니다.

2 B자산운용사의 OEM펀드 운용

- □ B자산운용사는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최종 확정하는 등 일명 'OEM 펀드'를 운용하여 저축은행의 부실 이연에 조력하였습니다.
 - 또한, 별도 실사절차 없이 대출취급 시점(최대 4년전)의 감정평가 금액을 사용하여 산정한 외부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해당 펀드가 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.
 - B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상 금지*되어 있는 'OEM 펀드'를 설정· 운용함으로써 펀드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.
 - *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·지시·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금지(자본시장법 §85, 시행령 §87④5호)

Ⅲ. 향후 계획

- □ 금융감독원은 A저축은행의 **旣발생 매각이익**(대손충당금 환입분)에 대해서는 유가증권(수익증권) **손상차손**을 **인식**하도록 지도*하고,
 - * 계열사 포함 펀드에 투자한 타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손상차손 인식 지도
 - 매각자산을 저축은행 장부에 재계상하는 방식 등을 통해 편법 매각으로 인한 **연체율·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효과도 제거**할 예정입니다.
 - 또한, 운용사의 OEM 펀드 운용 등 위법·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.
- □ 금융회사는 PF 대출채권 정리과정에서 편법적 금융질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,
 -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OEM 펀드 등을 활용하여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속하고, 필요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PF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
 - 저축은행 업권의 **편법적인 건전성 제고행위**에 대해서는 **엄정하게**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- ※ 보도자료에 명시된 내용은 향후 검사 후속처리 과정에서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일부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